

제8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상호 호혜적인 기초 하에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나. 양 당사국 각각의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 및 투명성, 그리고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는 수출 무역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양 당사국의 규제 권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의 정책목표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다.

제8.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계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제10.2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의한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1.5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것들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국적법」 또는 그 승계 법령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자연인에 대하여는,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른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항공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투하, 클라이더 견인, 그리고 별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제8.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한쪽 당사국의 인의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제8.6조 및 제8.10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¹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8.2조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 나. 정부조달
- 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 라. 제8.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공기업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국내 서비스,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부가되는 조건
- 마.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바. 시민권, 국적,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 또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8.6 조 및 제 8.10 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로 제한된다.

사. 항공 운송 서비스 또는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다만, 이 장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 1)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 4) 특수항공서비스

제8.4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5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6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²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8.7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8.8조 비합치 조치

1.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² 이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8.9조 보조금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보조금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GATS 제15조에 따라 합의된 모든 규율에 비추어, 양 당사국은 그러한 규율을 이 협정에 통합할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보조금의 발생가능한 무역왜곡효과에 대한 규율 사안을 고려한다.
3.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8.10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 가.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완전한 사항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 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 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검토 중인 신청의 처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라.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사유를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거부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3. 제2항은 부속서 I 및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가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영향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제5항의 규정은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는 것이 당사국의 헌법적 구조 또는 법적 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할 경우 당사국에게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당사국이 제4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표준이 고려된다.

8. 부속서 I 및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조치를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9.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개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제8.11조 인정³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8.5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기준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12조 교육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적 및 국가적 발전 요소로서 그리고 양 당사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교육 협력에 대한 대화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는 이 조에 적용된다.

제8.13조 지불 및 송금

1.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경상 거래를 위한 국제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과 송금이 지불 또는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국내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가. 과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라. 형사범죄
-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 바. 사회 보장, 공적 퇴직 또는 강제적인 예금 제도, 또는
- 사. 과세

제8.14조 혜택의 부인

1.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통보⁴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⁴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한쪽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통보를 제공한다.

- 나. 서비스가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에 의하여 공급되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2. 제1항에 따라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 이후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협의는 제19장(분쟁해결) 및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8.15조 서비스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한다.
- 나.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 다. 양 당사국 간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기업인의 이동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조치를 모색한다.
- 라. 전문직 서비스 사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관심사로 확인된 분야에서의 상호 인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한다. 그리고
- 마. 이 장 및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개별 작업반은 공공기관 또는 업계 대표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5. 서비스 위원회는 원격회의, 영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직접 대면으로 회합하기로 결

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합 장소는 양 당사국에서 교대로 한다.

제8.16조 금융서비스 작업 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이 협정에 금융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의 실현 가능성 및 편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제8.17조 통신서비스

1. 통신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GATS 통신 부속서에 의하여 규정되며,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부속서 8-나에 첨부된 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 참조문서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1.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가치, 그리고 전문직 자격인정과 등록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사안에 관한 대화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자격 또는 전문직 등록의 인정에 대한 조기성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및 수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 규제기관 및 관련 전문직 서비스 산업 기관 간 또는 그들 사이의 대화의 수립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4. 그러한 인정은 규제적 결과의 인정,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수단으로서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을 통하여) 부여되는 자격 및 전문직 등록의 인정 또는 양 당사국 간 및 산업 기관 간 체결되는 인정 약정을 통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부속서 8-나 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 참조문서

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 참조문서에 규정된 원칙들은 제8.17조에 언급된 GATS 통신 부속서에 추가적인 약속이다.

참조문서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⁵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⁶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⁵ 이는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그러한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⁶ “필수 설비”의 정의는 “지배적 공급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뉴질랜드의 경쟁정책제도와 합치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것이다.

상기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 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절은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의 보장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2.5 상호접속: 분쟁 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가. 언제라도, 또는
-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이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 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 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될 것이다.

- 가.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 나.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모든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⁷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⁷ 그러한 절차는 법과 규정, 공개 입찰 절차 및 협의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에 의하여 운영 될 수 있다.